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2014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201440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213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안병준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변론 종결2020. 4. 22.

판결 선고2020. 5. 27.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213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그리고 원고는 ~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분을 삭제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하단 제2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6)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의무 즉, 원고의 E,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피고의 변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정산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의 E, D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4.부터 2016.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근저당권자인 F조합과 이 사건 제2토지의 근저당권자인 J조합에게 대출이자 합계 12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대출이자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의 대부분은 상호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확인서 작성일인 2016. 9. 19. 이전일 뿐 아니라, 피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의 E,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F조합 등에 변제하였다는 위 대출이자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박성준

판사한기수

별지